

경제적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갈등 인식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차유정* · 노성훈**

국 | 문 | 요 | 약

경제적 계층과 형사사법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는 서구의 비범범죄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이러한 논의는 법률의 형성 및 집행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범죄학계는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에 경도된 나머지 형사사법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결핍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제적 계층에 따라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양자 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8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이고 표본은 총 6,300개이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계층, 형사사법 불공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사회갈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형사사법기관이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인식이 높았다. 사회갈등 인식은 경제적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형사사법기관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2.12.31.4.39>.

❖ 주제어 :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사회갈등 인식, 경제적 계층, 갈등이론, 법적 정당성

* 주저자: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경찰대학 행정학과,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

I. 서론

형사사법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 행위자에 대해 어떤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가할지에 대한 기본원칙에 따라 작동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사법의 원칙은 법률로 확정된다. 그런데 원칙과 법률 차원의 형사사법과 실제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집행과 재판의 형태로 구현되는 형사사법의 모습에 대한 인식 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범죄학자 존 헤이건과 셀레스타 알보네티(Hagan & Albonetti, 1982: 329-330)는 다음과 같은 말로 형사사법의 의미를 표현한다.

형사사법의 의미는 범죄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상징적(symbolic)이면서 동시에 가변적(variable)이다. 형법 및 집행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고 기대된다. 는 점에서 형사사법은 상징적이다. 이러한 상징과 원칙이 법률적 개념의 측면과 일반인의 인식 측면에서 다르다는 점에서 형사사법은 가변적이다.

공정한 법집행과 재판은 형사사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원칙이 실제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눈에 비친 형사사법의 법집행과 재판은 사람에 따라 공정과 불공정의 스펙트럼 위에 다르게 위치한다. 객관적인 상수(constant)로서의 형사사법 원칙과 주관적인 변수(variable)로서의 형사사법 인식 간의 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형사사법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인식한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불공정하게 작동된다는 인식은 법집행에 대한 불신과 공권력의 정당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지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정치 시스템 자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 형사사법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범죄 발생의 위험이 커지기도 하고(Tylor, 1990; LaFree, 1998), 재범 가능성이 증가하기도 한다(Petersilia & Deschenes, 1994). 저항이론(defiance theory)에 따르면 사람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더욱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인다(Sherman, 1993). 범죄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법적 제재가 불공정하다고 규정하면 분노의 감정을 불법행위를 통해 표출하는 방식으로 저항하는데, 제재가 차별적이거나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 불공정하다고 간주하게 된다. 이렇

게 형사처벌의 불공정성 인식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불법행위를 합리화하는 태도로 이어진다(서한별 & 황의갑, 2019).

그런데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계층에 따라 가변적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계층이 낮을수록 형사사법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Hagan & Albonetti, 1982; Hagan, Shedd, & Payne, 2005; Unnever, Gabbidon, & Higgins, 2011; Walker, Spohn, and DeLone, 2012).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소수인종에게서 형사사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Matsueda, et al., 2011). 계층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연관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위계층에 대한 불공정한 법집행 및 형사절차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또는 재회의 불공평한 분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자원(예: 변호사 수입)의 차이에서 비롯된 인식일 수 있다(Black, 1976).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일수록 사회갈등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Wright, 1989; Delhey & Keck, 2008; Kelly & Evans, 2000). 사회갈등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본질을 이해관계를 둘러싼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찾는 경향이 크다. 이에 반해 사회갈등의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주로 합리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 간의 규범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믿는다(Bohm, 2001; Moore & Morris,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대립적 관점은 형사사법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전자는 형사사법제도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보지만 후자는 법 앞의 평등, 적정절차의 원리 등 형사사법의 원칙들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진다고 여긴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형사사법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사회갈등의 수준의 높다고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적 계층,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그리고 사회갈등 인식 간의 관련성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과연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관련성에서 개인의 계층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

다. 첫째, 사회갈등 인식이 높을수록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도 높지만 이는 계층에 의한 허위적 관계로 가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계층적 지위가 각각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단순히 계층적 지위에 의한 허위적 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그러나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관계가 비허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사회갈등 인식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계층적 지위는 양 변수에 대한 선행변수로서 계층적 지위가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다시 사회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변수 간에 조절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할 수 있다. 즉, 계층적 지위가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사회갈등의 인식 정도에 의해 조절된다고 가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형사사법에서의 갈등적 관점

형사사법에서의 갈등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는 개인이나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내의 갈등에서 비롯되는데, 이때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 형법은 지배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며 하위계층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형사사법제도 역시 법집행과 처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강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차별적 제도로 간주한다. 갈등이론 범죄학자 조지 볼드(George B. Vold)에 의하면 사회 집단은 다른 집단과의 지속적인 경쟁적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향상 또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방식을 사회질서 또는 사회조직이라고 불리는 다소 안정적인 힘의 균형상태에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된다(Bernard et al., 2019). 이때 사회질서는 집단 간의 합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힘과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집단 간의 ‘불편한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따라서 집단 간의 갈등은 사회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적 사회과정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Bernard et al., 2019). 챔블리스와 사이드만(Chambliss & Seidman, 1971)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은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재기구의 개입이 필요해지는데 그 과정에 정치적, 경제적 지배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행위규범을 강압적으로 집행하게 된다(Lilly et al., 2017:257에서 재인용).

1960년대 미국 사회는 다양한 집단이 갈등하고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던 혼란한 시기였다.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과 탈곳 파슨스(Talgot Parsons)의 기능주의적, 합의적 관점은 당시 사회의 혼란한 모습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이 시기에 마르크스 이론에 바탕을 둔 갈등적 관점이 범죄학 분야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가 내포한 근본적 문제를 소유권의 불평등과 생산수단의 통제를 둘러싼 계급 간의 갈등에서 찾았다. 기존의 노동착취적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자본계급과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동계급 간에는 갈등이 존재하며 그 속에서 타락하고 비인간화된 개인들은 범죄행위를 통해 환경에 동화되거나 저항한다(Bonger, 1916; Quinney, 1980). 국가는 자본계급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기관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통제한다. 그런 의미에서 형법은 지배계급의 이익과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Chambliss, 1975).

갈등이론은 범죄의 의미에 대해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퀴니(Quinney, 1970)는 범죄는 객관적 실재라기보다는 국가의 권위 있는 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행위에 대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권력 계층은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할 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한다. 그래서 스티븐 박스(Box, 1983)는 형법 조항이 ‘이데올로기적 구상물’(ideological constructs)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행위를 범죄화하는 대신 권력층의 유사한 행위는 범죄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회 고위층과 권력층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범죄의 심각성은 하위계층에 의해 저질러지는 일부 행위에 국한된다. 그 결과 실제로 권력 계층의 범죄가 더 심각한데도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 위험한 범죄자들이 하위계층에 많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고 하위계층에 대한 국가통제를 정당화한다. 국가의 법집행이 하위계층에 집중될수록 범죄통계를 통해 이러한 허위의식이 객관화되어 사실로 받아들여지

게 된다. 범죄 현상의 실상과 원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일종의 ‘공격대상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배계층은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하위계층의 범죄로 향하게 하여 실제로 문제의 근원이 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선 요구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Reiman & Leighton, 2016).

2. 계층과 형사사법에 대한 인식

다수의 연구들이 범죄학의 갈등적 관점에 대한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법에 규정된 내용과 법의 실제적 적용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법집행의 형평성 원칙 위반을 확인하고자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재판 결과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판결이나 형량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노동자 계층과 유색인종일수록 체포, 구금,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이 크고, 재판 전 석방 결정에서도 불리하며 더 장기간 교도소에 징역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Lizotte, 1978, Albonetti et al, 1989, Reiman & Leighton, 2016).

그런데 형사사법에서의 계층에 따른 차별과 공정성의 문제는 주관적 인식의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막스 베버(Max Weber)가 법적 정당성(legitimacy)의 개념을 통해 논의한 바 있는데, 베버는 법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 합리성(legal rationality)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편적 규칙으로서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판사 등 형사사법의 주체들이 비인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원칙에 따라 논리적인 분석과정을 거쳐 집행될 때 법적 합리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 그럴 때 비로소 일반 국민은 법체계를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어 법질서가 확립된다고 주장했다(Weber, 1978). 이와 비슷하게 톰 타일러(Taylor, 1990; Sunshine & Taylor, 2003)도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의 개념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법집행 결과의 수용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법적 정당성은 법집행기관이 객관적 차원에서 법과 규정을 얼마나 준수했는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집행의 대상자들이 법집행기관과 법집행 행위 및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며 정의롭다고 여기는지의 문제다.

형사사법에서 말하는 공정성은 형평(fairness)와 정당(justice)의 의미를 담고 있다. 법 집행의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정당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동시에 법집행 절차와 결과가 타인과 비교해서 차별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헤이건과 알보네티의 연구(Hagan & Albonetti, 1982)는 형사사법의 불공정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1) 법집행기관(경찰)이 가난한 용의자와 부유한 용의자를 대우하는 방식이 다른지, 2) 법집행기관(경찰)이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지, 3) 법원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지, 4) 배심원단이 당신이 속한 공동체를 대표하는지, 5) 변호인이 가난한 의뢰인과 부유한 의뢰인을 대우하는 방식이 다른지, 6) 법원이 가난한 피고인과 부유한 피고인을 대우하는 방식이 다른지를 질문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기도 했는데, 헤이건과 동료들(Hagan, Shedd, & Payne, 2005)은 ‘경찰이 가난한 사람에 비해 부유한 사람을 더 좋게 대우하는지’ 질문하였고, 마수에다와 동료들(Matsueda et al., 2011)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가난한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경찰에 의해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런데 형사사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사람이 속한 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할수록 형사사법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계층(class)은 한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교육 수준, 직업적 지위, 그리고 소득 수준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계층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연관성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Buckler & Unnever, 2008; Hagan, Shedd, and Payne, 2005; MacDonald et al., 2007; Unnever, Gabbidon, & Higgins, 2011; Walker, Spohn, and DeLone, 2012; Weitzer et al., 1999). 대부분의 미국 연구에서는 계층과 인종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취약성과 인종의 조합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모든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Hagan and Albonetti 1982; Wortley, Hagan and Macmillan 1997; Brooks and Jeon-Slaughter 2001). 다수의 연구는 백인보다 흑인의 인식이 더욱 부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러한 인종의 영향은 소득수준이나 취업상태 등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나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종과 상관없이 형사사법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흑인 집단 내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불공정 인식은 비례해서 감소했다. 경제적 취약성의 영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확인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구조적 취약요인들은 주민들 사이에 형사사법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Berg et al., 2016).

국내에서도 법집행의 공정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 신의기와 강은영의 연구(2012)에 따르면 80% 가까운 응답자가 권력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수준과 법 인식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법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외(2015)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67%는 법집행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신분이나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사람은 14.4%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임동진과 박관태의 연구(2017)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력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스스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법집행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사회적 분배구조 전반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경찰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서 홍명기와 장정현(2020)은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3. 계층과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사회갈등 인식(perceived social conflicts)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적대적인 관계로 특징짓는 경향이 강하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노동자와 사업주, 남성과 여성, 청년세대와 장년세대 사이를 갈등적 관계로 규정한다(서문기, 2004; 정정화, 2011; 오창우, 2017; 고대유, 2022; 정수현, 한의식, 정희옥, 2017) 사회갈등 인식의 수준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불평등 수준과 사회의 계층화 정도에 대한 인식, 개인의 정치적 태도 및 이념적 확신 등이 이에 속한다. 무엇보다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사람의 사회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안락한 여건에 비추어 사회가 전반적으로 평등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원의 갈등보다는 합의적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은 사회가 불평등한 구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 간의 갈등에 더 큰 관심을 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착취구조에 기반한 생산양식을 토대로 삼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지위 상승과 삶의 수준 향상을 향한 열망이 높은 중산층도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사회를 갈등적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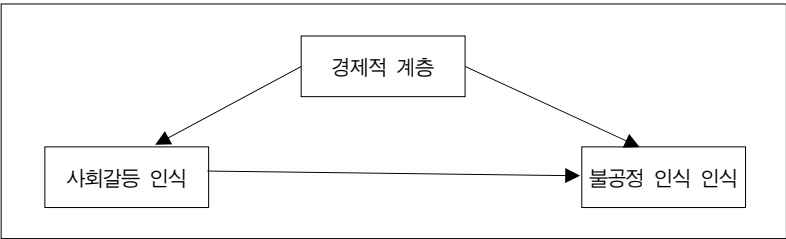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이 계층과 사회갈등 인식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개인의 계층적 지위가 낮을수록 사회갈등 인식은 높았다(Wright, 1989; Delhey & Keck, 2008; Kelly & Evans, 2000). 또한 물질적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계층 간 갈등에 대한 인식도 증가했다(Edlund & Lindh, 2015). 객관적 차원의 불평등 수준이 사회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차원의 인식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y & Evans, 1995). 국가 단위의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27개 OECD 국가들을 상대로 한 비교 연구에서 중상위 계층의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사회갈등 인식 수준이 낮았다(Hertel & Schoneck, 2019). 국내 연구로는 유일하게 임동진과 박관태(2017)의 연구가 있는데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사회갈등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사회갈등 인식을 계층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측정하였다.

4. 이론적 모형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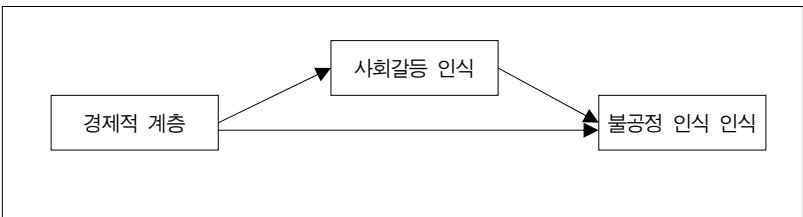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배경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경제적 계층, 사회갈등 인식 그리고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론적 모형을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3가지 경쟁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경제적 계층,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관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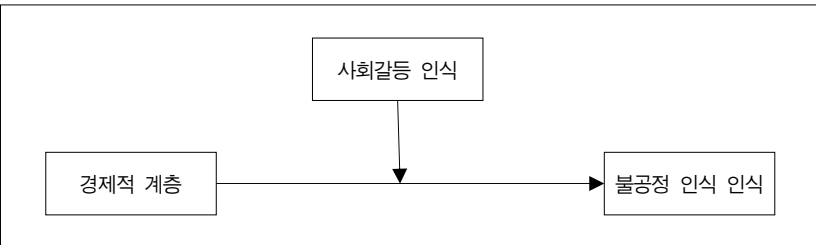
(a) 계층에 의한 허위적 효과 모형



(b) 사회갈등 인식에 의한 매개효과 모형



(c) 사회갈등 인식에 의한 조절효과 모형



H1 : 사회갈등 인식이 높을수록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도 높는데 이는 경제적 계층에 의한 허위적 관계이다.

H2 : 낮은 경제적 계층일수록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이 높으며 이러한 관계는 사회갈등 인식에 의해 매개된다.

H3 : 낮은 경제적 계층일수록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이 높으며 이러한 관계는 사회갈등 인식에 의해 조절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2018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서베이연구센터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6일까지 수집되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가 201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국단위 국민인식조사이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대인면접조사가 실시되었다. 다단계 층화집락표집으로 6,300명이 조사를 위해 추출되었다.

2. 변수측정 및 연구모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하 ‘불공정 인식’)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된 기관은 3가지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이 있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있다. 형사절차를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3가지 기관 중 1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할 수밖에 없기에 3가지 기관을 하나로 묶어 형사사법기관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종속변수의 문항은 ‘법원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경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의 3가지 문항들로 측정된 것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을 위해 역코딩한 뒤 3문항에 대한 응답점수를 합산해서 사용하였다(Cronbach’s α =0.821).

나. 독립변수

첫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하 ‘사회갈등 인식’)은 세대, 계층, 지역, 성별, 정치이념 등 여러 사회적 영역에 있어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갈등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집단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뒤 20-30대와 50-60대, 부자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지방, 고용주와 근로자, 남자와 여자, 진보와 보수, 임대인과 임차인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1=갈등 수준이 매우 낮다’, ‘2=갈등수준이 낮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갈등수준이 높은 편이다’, ‘5=갈등수준이 매우 높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응답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0.768$)

두 번째 독립변수인 ‘경제적 계층’은 응답자가 인식하는 상대적 임금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객관적 차원의 소득수준보다는 주관적 차원에서 자신의 상대적 임금수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인식 형성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¹⁾ 주관적인 경제적 계층은 ‘귀하께서는 귀하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였고 응답은 ‘1=10%’부터 ‘10=100%’까지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을 선택한 응답자는 자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10%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10’을 선택한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100%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임금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통제변수

‘성별’, ‘정치적 성향’, ‘연령’, ‘학력’을 분석모형에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성별은 ‘1=남성’, ‘2=여성’으로 측정하였다. 정치적 성향은 본 설문조사가 본래 정부의 업무수행이 적절한지 묻기 위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현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선정했다. 김상돈(2009)은 정치적 성향과 정책 불신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며 또한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국가기관 불신과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류준혁과 홍태경(2016)의 연구에서

1)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에 활용할 수 없었다.

도 시민들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경찰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정치적 성향은 ‘귀하께서는 스스로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뒤 ‘1=매우 진보적’, ‘2=다소 진보적’, ‘3=중도 성향적’, ‘4=다소 보수적’, ‘5=매우 보수적’ 등 5개 응답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연령은 조사 당시 응답자의 만 나이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1=미취학’, ‘2=초등졸(재학)’, ‘3=중졸(재학)’, ‘4=고졸(재학)’, ‘5=전문대졸(재학)’, ‘6=대졸(재학)’, ‘7=대학원 석사졸업(재학)’, ‘8=대학원 박사 이상 졸업(재학)’으로 응답한 것을 ‘미취학’부터 ‘고졸(재학)’까지 0으로 코딩하고, ‘전문대졸(재학)’부터 ‘대학원 박사 이상 졸업(재학)’까지를 1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2.0버전과 Process Macro 4.1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는 Process Macro를 통해 분석하였다(Hayes(2012)). Process Macro의 매개효과 분석은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Process Macro가 제시하는 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홍명기, 장현석, 2018). 매개분석에서 Bootstrapping은 간접효과의 표본분포의 대표치를 경험적으로 도출하는데 사용되며 Sobel 검정과 달리 Bootstrapping은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표본분포의 비정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Sobel 검정보다 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고 검정력도 높게 나타난다(이형권, 2015).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사회갈등 인식의 평균값은 25.18($SD=3.65$)로서 비교적 사회갈등 인식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계층은 평균이 3.97($SD=1.74$)로서 자신의 상대적인 경제적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3,154명, 여성이 3,146명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정치적 성향은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55명, ‘다소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265명, ‘중도 성향’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863명, ‘다소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35명,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1명이었다. 종속변수인 불공정 인식은 평균값이 9.61($SD=2.22$)로서 형사사법기관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95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48세였다. 학력은 고졸(재학)이하가 고졸 이상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들의 척도, 왜도는 절대값 기준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측값은 없었다.

〈표 1〉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N=6,300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사회갈등 인식	7	35	25.18	3.65
	경제적 계층	1	10	3.97	1.74
통제변수	성별	1	2	1.5	0.50
	정치적 성향	1	5	2.90	0.83
	연령	19	95	48.04	15.80
	학력	0	1	0.46	0.50
종속변수	불공정 인식	3	15	9.61	2.22

2. 상관관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불공정 인식은 사회적 갈등 인식과는 정적관계($r=.218$, $p<0.01$), 경제적 계층과는 부적관계($r=-.042$, $p<0.01$)를 나타냈다. 즉, 사회갈등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경제적 계층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형사사법기관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남성일수록($r=-.042$, $p<0.01$), 정치적 성향이 보수쪽에 가까울수록($r=.026$, $p<0.05$) 형사사법기관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불공정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회갈등 인식도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 및 정치적 성향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연령($r=.031$, $p<0.05$)이 낮을수록, 학력($r=.055$, $p<0.01$)이 높을수록 사회 갈등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1) 불공정 인식	1						
2) 사회갈등 인식	.218**	1					
3) 경제적 계층	-.042**	-.073**	1				
4) 성별	-.033**	-.020	-.058**	1			
5) 정치적 성향	.026*	-.001	-.068**	0.043**	1		
6) 연령	-.014	-.031*	-.119**	.080**	.294**	1	
7) 최종학력	-.003	.055**	.132**	-.147**	-.230**	-.589**	1

* $p<0.05$, ** $p<0.01$

3. 가설 검증 결과

가. 경제적 계층에 의한 허위관계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정적관계가 경제적 계층에 의한 허위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제적 계층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1과 포함된 모형2를 비

교했다. 모형1에서 경제적 계층을 제외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 사회갈등 인식은 형사사법 불공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갈등 인식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형사사법기관이 불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형2에서 경제적 계층을 투입한 후에도 사회갈등 인식이 여전히 불공정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사이에 경제적 계층에 의한 허위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사회갈등 인식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사이에는 실제적인 영향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통제변수의 경우 모형1과 2 모두에 있어서 남성일수록,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형사사법기관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학력은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해 본 바 VIF값이 2를 넘는 변수는 없었다.

〈표 3〉 경제적 계층에 의한 허위관계 검증

	모형 1			모형 2		
	B	β	t	B	β	t
상수	6.638		20.979 ***	6.772		20.979 ***
사회갈등 인식	0.133	0.218	17.704 ***	0.131	0.216	17.453 ***
경제적 계층				-0.033	-0.026	-2.084 *
성별	-0.140	-0.031	-2.522 *	-0.143	-0.032	-2.580 *
정치적 성향	0.081	0.030	2.353 *	0.079	0.030	2.306 *
연령	-0.004	-0.030	-1.785	-0.004	-0.030	-1.757
최종학력	-0.042	-0.024	-1.428	-0.033	-0.019	-1.118
R ² (adj. R ²)	0.050(0.049)			0.050(0.049)		
F	65.682***			55.488***		

* : p< .05 *** : p< .001

나. 사회갈등 인식의 매개효과

경제적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갈등 인식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하였다. 사회갈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1에서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사회갈등 인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 다음으로 모형2에서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불공정 인식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사회갈등 인식이 높을수록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 인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층이 사회갈등 인식을 통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부트스트랩 결과(하한값: -0.0238, 상한값: -0.0120)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하한값: -0.0509, 상한값: -0.0020), 마지막으로 총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하한값: -0.0691, 상한값: -0.0192). 이를 통해서도 사회갈등 인식이 계층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사회갈등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1 (종속변수: 사회갈등 인식)			모형 2 (종속변수: 불공정 인식)		
	B	β	t	B	β	t
상수	25.7618		81.9385 ***	6.7238		25.0147 ***
사회갈등 인식				0.1312	0.2160	17.4988 ***
경제적 계층	-0.1720	-0.0820	-6.4675 ***	-0.0336	-0.0264	-2.1206 *
성별	-0.1140	-0.0156	-1.2311	-0.1462	-0.0330	-2.6535 **
정치적 성향	0.0432	0.0099	0.7502	0.0774	0.0291	2.2587 *
연령	-0.0012	-0.0053	-0.3364	-0.0048	-0.0340	-2.1887 *
최종학력	0.4561	0.0623	3.9613 ***	-0.1315	-0.0296	-1.9179
R ²	0.0099			0.0506		
F	12.5283 ***			55.9144 ***		

* : $p < .05$ *** : $p < .001$

〈표 5〉 경로분석 결과

효과	경로	β	S.E.	LLCI	ULCI
간접효과	계층 → 사회갈등 인식 → 불공정	-0.0177		-0.0238	-0.0120
직접효과	계층 → 불공정	-0.0264	0.0125	-0.0509	-0.0020
총효과	계층 → 불공정	-0.0442	0.0127	-0.0691	-0.0192

다. 사회갈등 인식의 조절효과

다음은 경제적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갈등 인식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모형1에서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경제적 계층과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사회갈등 인식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2에서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경제적 계층과 사회갈등 인식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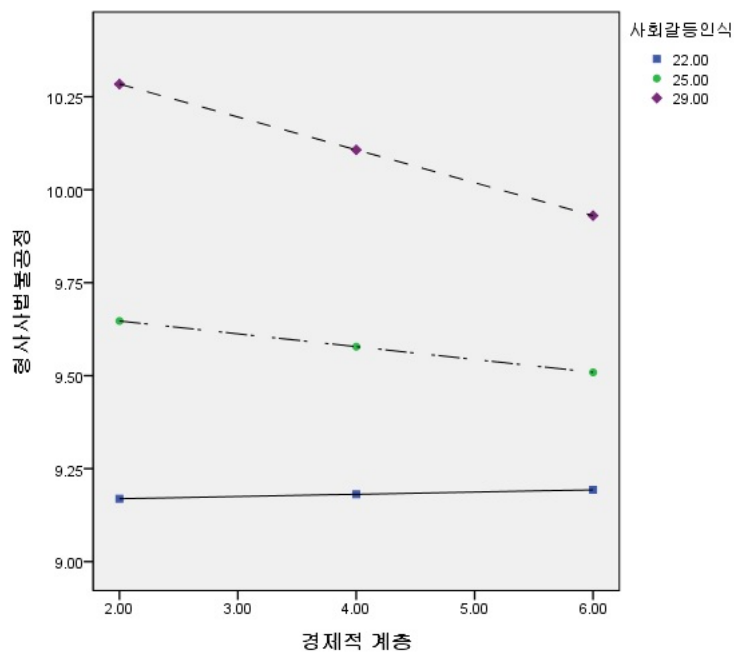
[그림 2]는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1SD, Mean, +1SD’를 통해 조건부 효과를 측정하나 이 방법은 표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측정척도에 따라 조절변수의 평균값이 매우 낮은 또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백분위를 사용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이형권, 2015). 이에 따라 조절변수인 사회갈등인식을 각각 16th, 50th, 84th 퍼센타일(percentiles)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사회갈등인식이 낮은집단(22.00), 중간집단(25.00), 높은집단(29.00)이 된다. 즉 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은 증가하는데 이러한 부적 영향은 사회갈등 인식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표 6〉 사회갈등 인식의 조절효과 검증

	모형1			모형2			모형3		
	(기본모형)			(사회갈등 추가모형)			(상호작용 모형)		
	B	β	S.E. p	B	β	S.E. p	B	β	S.E. p
상수	10.103		0.191 ***	6.724		0.269 ***	5.354		0.516 ***
경제적 계층	-0.056	-0.044	0.016 **	-0.034	-0.026	0.016 *	0.301	0.236	0.109 **
사회갈등인식				0.131	0.216	0.007 ***	0.186	0.307	0.019 ***
경제적계층× 사회갈등인식							-0.013	-0.274	0.004 **
성별	-0.161	-0.036	0.056 **	-0.146	-0.033	0.055 **	-0.150	-0.034	0.055 **
정치적 성향	0.083	0.031	0.035 *	0.077	0.029	0.034 *	0.074	0.028	0.034 *
연령	-0.005	-0.035	0.002 *	-0.005	-0.034	0.002 *	-0.005	-0.033	0.002 *
최종학력	-0.072	-0.016	0.070	-0.131	-0.030	0.069	-0.132	-0.030	0.069
R ² (Adj. R ²)	0.004(0.004)			0.051(0.050)			0.052(0.051)		
F값	5.585***			55.914***			49.377***		
ΔR ²	0.004			0.046			0.001		
ΔF값	5.585***			306.207***			9.691**		

* : p< .05 ** : p< .01 *** : p< .001

[그림 2] 사회갈등 인식의 조절효과 그래프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범죄학의 갈등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경제적 계층이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 속에서 사회갈등 인식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째, 연구를 통해 경제적 계층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형사사법기관이 불공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에 실제로 존재하는 불공정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흔히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대표되는 형사사법의 불공정성 문제는 비판범죄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출발한 초기 급진이론은 애초에 범죄행위 자체가 개인의 어떠한 병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속 고립되고 소외된 인간이 벌이는 투쟁의 결과

로 이해했다(Talyor, Walton, Young, 1973). 자본을 장악한 권력 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범죄와 일탈이 정의되고 형사사법제도는 이러한 지배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Bonger, 1916).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이에 따른 계층화(stratification)라는 사회적 요소에 의해 움직이는 동적(動的) 속성이 정부의 공식적 사회통제 수단인 법률에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한 도널드 블랙(Black, 1976)의 주장도 급진이론의 연장선에 있다. 블랙에 의하면 개인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낮을수록 동원할 수 있는 법의 양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향하는 법이 그 반대 방향보다 크다. 또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수직거리가 커질수록 적용되는 법의 양이 증가하고 법의 유형도 더욱 징벌적(punitive)으로 된다(Black, 1976). 이와 같은 비판범죄학자들의 주장이 현실화할 때 형사사법 정의(criminal justice)는 ‘계급 정의’(class justice)가 될지도 모른다(Talyor et al., 1973).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는 경제적 취약성과 기회 박탈의 의미를 넘어 형사절차적으로 취약한 ‘형사사법적 약자’와 동일시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가 형사사법의 불공정성이 실재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다는 단지 시민들, 특히 경제적 하위계층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그저 허위의식 정도로 치부할 수는 없다. 사실 형사사법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법성(legality)뿐만 아니라 ‘법적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법규정의 위반 여부에 의해 평가되는 적법성과 달리 법적 정당성은 형사사법기관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판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 정당성은 반드시 적법성 여부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객관적 차원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집행을 당하는 시민은 정당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톰 타일러(Tyler, 1990)에 의하면 법집행이 절차적 정의를 충족했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해당 법집행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재판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여도 재판과정이 공정하다고 인식한 사람은 그 결과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Thibaut & Walker, 1975).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일러는 법집행 대상자에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들의 주장에 귀기울이며 가능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형사사법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이 중립적이며 편견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 정보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

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기관이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사회 전반의 일반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갈등 인식의 수준이 경제적 계층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사이에서 매개 요인 또는 조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범죄학계는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와 인간 행동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범죄예방정책(예: 셉테드)을 다루는 고전주의 범죄학과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범죄 원인을 규명하려는 실증주의 범죄학이 학계와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대 범죄학 패러다임은 법률의 형성, 범죄의 의미, 사회의 본질 등에 대해서 합의론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합의론적 관점에 의하며 법률은 사회 전체 합의의 결과이며, 따라서 범죄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입장을 막론하고 허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규정된다. 하지만 또 다른 범죄학 패러다임인 비판적 범죄학에서는 사회의 본질을 합의가 아닌 갈등에서 찾는다. 사회는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 간의 힘의 대결을 통해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될지, 위반자에게는 어느 수준의 형벌을 부과할지가 결정된다. 비판적 범죄학자들은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의 주도하에 범죄가 정의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경제적 하위계층일수록 한국 사회 내 갈등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갈등의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 내에서 경제적 계층과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 간의 관련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 갈등론적 관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범죄학 연구가 지나치게 합의론적 관점에만 경도되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범죄의 의미, 발생원인 그리고 형사사법제도를 통한 범죄통제에 이르기까지 갈등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갈등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20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7.6%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조권중·최지원, 2021). OECD 29개국 중에서 한국은 사회갈등 지수(SCI)가 7번째로 높은 나라이다(이부형·박용정, 2017). 전문가들은 사회갈등

이 해소되기 위해 우선하여 개방된 의사소통 채널이 마련되어야 하고, 갈등 이해관계자, 정부,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개방된 네트워크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이환범·김태희, 2014). 또한 갈등 당사자들 간의 이념적 거리만을 좁히는 노력과 함께 사회구조적,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유희정, 이숙중, 2016). 단순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 외에도 경제적 배분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오민지, 2022).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응답자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경험이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석모형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다. 형사사법절차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형사사법 불공정 인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Buckler et al., 2011; Pllock & Menard, 2015; Callanan & Rosenberger, 2011). 또한 법집행 및 형사절차의 개시, 과정, 결과 등은 형사사법기관 및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와 같은 변수들을 포함한 1차 자료가 수집되어 형사사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형이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세현. (1998). “범죄와 비행 연구에 있어 이론적 통합론의 비판적 고찰.” 論文集 22.-128-137.
- 고대유. (2022). 공정성과 사회갈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20(1), 147-170.
- 김상돈. (2009).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이 국가기관 불신에 미치는 영향: 정부 정책 불신의 매개효과. 한국사회학, 43(2), 25-54.
- 김혜원, 박운환. (2016). 경찰신뢰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9, 40-61.
- 박성훈, 최이문, 강우예. (201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IX):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59.
- 박효민, 김석호. (2015).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이론, 219-260.
- 송영남, 최재용, 이운호. (2015). 위계적선형모형을 활용한 국민의 경찰신뢰도 영향요인 분석. 한국범죄학, 9(1), 3-32.
-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195-218.
- 서한별, 황의갑. (2019).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범위반 합리화에 미치는 영향-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매개효과. 한국경찰연구, 18(1), 191-218.
- 신의기, 강은영, 김일수. (2012).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11.
- 오민지. (2022). 사회갈등인식이 국가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2(4), 63-89.
- 유영현, 신성식. (200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337-356.
- 유희정, 이숙중. (2016).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7(1), 39-80.
- 류준혁, 홍태경. (2016). 시민의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성향과 경찰에 대한 인식과의 관

- 계 연구. *Crisisonomy*, 12(2), 129-143.
- 오창우. (2017). 한국에서의 사회갈등 논의의 의미연결망 분석: 주요 포털에서의 핵심어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45, 37-67.
- 이건. (2015).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27-51.
- 이병도. (2017). 경찰신뢰도 궤적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9(2), 141-170.
- 이부형, 박용정. (2016).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사회적 갈등 개선으로 3%대 성장 가능하다!. *한국경제주평*, 718, 1-16.
- 이승모, 하동현. (2020). 공공갈등과정에서 사회집단의 역할유형 분석: 갈등의 발생책임과 해소노력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4), 203-229.
- 이형권(역).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신영사.
- 이환범, 김태희. (2014).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6(2), 141-160.
- 임동진, 박관태. (2017). 사회경제적 지위와 통신신뢰가 공정성 및 사회갈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4239-4251.
- 임현철, 은재호. (2020). 미래의 갈등관리, 어디로 가야하나? 공정성, 소통, 사회갈등의 삼각관계. *입법과 정책*, 12(3), 57-88.
- 장현석. (2013).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2(2), 213-236.
- 정수현, 한의석, 정화옥. (2017). 한국 사회의 갈등양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 표적집단면접 (FGI) 을 통한 분석. *미래정치연구*, 7(2), 115-140.
- 정정화. (2011).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공공갈등: 국책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3), 1-27.
- 조권중, 최지원. (2021). 서울 시민의 사회갈등 인식과 시사점. *정책리포트*, 1-22.
- 황의갑, 홍명기. (2020).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비교 연구-중국, 몽골,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9(3), 291-334.

- 홍명기, 장정현. (2020). "Factors Affecting Korean Public Opinion of the Police: The Conflict Perspective." 한국테러학회보 13(4), 133-144.
- 홍명기, 장현석. (2018). 낮은 자기 통제력이 비행피해에 미치는 영향: 기회요인과 부모 감독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2(2), 99-119.
- Albonetti, C. A., Hauser, R. M., Hagan, J., & Nagel, I. H. (1989). Criminal justice decision making as a stratification process: The role of race and stratification resources in pretrial releas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5(1), 57-82.
- Berg, M. T., Stewart, E. A., Intravia, J., Warren, P. Y., & Simons, R. L. (2016). Cynical streets: Neighborhood social processes and perceptions of criminal injustice. *Criminology*, 54(3), 520-547.
- Bernad, Tomas J., Snipes, Jeffrey B., & Gerould, Alexander. L. (2019). Vold의 이론범죄학. 그린출판사.
- Black, D. (1976).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 Bonger, W. A. (1916). *Criminality and economic conditions*. Boston, MA: Little, Brown & Company.
- Boulding, K. E. (1962). *Conflict and defense: A general theory*. New York, NY:Harper & Row.
- Box, S. (1983). *Power, crime and mystification*. London: Routledge.
- Brooks, R. R., & Jeon Slaughter, H. (2001). Race, income, and perceptions of the US court system.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19(2), 249-264.
- Buckler, K., & Unnever, J. D. (2008). Racial and ethnic perceptions of injustice: Testing the core hypotheses of comparative conflict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6(3), 270-278.
- Buckler, K., Wilson, S., Hartley, D., & Davila, M. (2011). Racial and ethnic perceptions of injustice: Does prior personal and vicarious incarceration experience alter the racial/ethnic gap in perceptions of injustice?. *Criminal Justice Review*, 36(3), 269-290.

- Callanan, V. J., & Rosenberger, J. S. (2011). Media and public perceptions of the police: Examining the impact of race and personal experience. *Policing & Society*, 21(2), 167-189.
- Chambliss, W. J. & Seidman, R. (1971). *Law, Order and Power*. Reading, MA: Addison-Wesley
- Chambliss, W. J. (1975).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crime. *Theory and Society*, 2(1), 149-170.
- Chow, H. P. (2012). Attitudes towards Police in Canada: A Study of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a Western Canadian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7(1).
- Edlund, J., & Lindh, A. (2015).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revisited: the welfare state, social cohesion and political conflict. *Acta Sociologica*, 58(4), 311-328.
- Gabbidon, S. L., Higgins, G. E., & Potter, H. (2011). Race, gender, and the perception of recently experiencing unfair treatment by the police: Exploratory results from an all-black sample. *Criminal justice review*, 36(1), 5-21.
- Hagan, J., & Albonetti, C. (1982). Race, class, and the perception of criminal injustice 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2), 329-355.
- Hagan, J., Shedd, C., & Payne, M. R. (2005). Race, ethnicity, and youth perceptions of criminal injusti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3), 381-407.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 Hertel, F. R., & Schöneck, N. M. (2022). Conflict perceptions across 27 OECD countries: The roles of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collective stratification beliefs. *Acta Sociologica*, 65(3), 231-249.
- Jang, H., Joo, H. J., & Zhao, J. S. (2010). Determinants of public confidence in

- poli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1), 57-68.
- J. Robert Lilly, Francis T. Cullen & Richard A. Ball. (2017). *범죄학 이론: 사회적 배경과 결과물*. 박영사.
- Kelley, J., & Evans, M. D. (1995). Class and class conflict in six western n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57-178.
- Kelley, J., & Evans, M. D. R. (2000) Public perceptions of class conflict in 21 nations. In: Tos N, Mohler P, Malnar B (eds) *Modern Society and Values: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ISSP Project*. Ljubljana: University of Ljubljana, pp.43-71.
- LaFree, G. (1998). *Losing Legitimacy: Street Crime and the Decline of Social Institutions in America*. Boulder, CO: Westview.
- Lizotte, A. J. (1978). Extra-legal factors in Chicago's criminal courts: Testing the conflict model of criminal justice. *Social Problems*, 25(5), 564-580.
- MacDonald, J., Stokes, R. J., Ridgeway, G., & Riley, K. J. (2007). Race, neighbourhood context and perceptions of injustice by the police in Cincinnati. *Urban Studies*, 44(13), 2567-2585.
- Matsueda, R. L., Drakulich, K., Hagan, J., Krivo, L., & Peterson, R.D. (2011). Crime,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and electoral politics, in J. H., Aldrich & K. M. McGraw (Eds), *Improving Public Opinion Surveys: Interdisciplinary Innovation and the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ore, M., & Morris, M. B. (2011). Political science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21(3), 284-296.
- Petersilia, J., & Deschenes, E. P. (1994). What Punishes-Inmates Rank the Severity of Prison vs. Intermediate Sanctions. *Fed. Probation*, 58, 3.
- Petrocelli, M., Piquero, A. R., & Smith, M. R. (2003). Conflict theory and racial

- profiling: An empirical analysis of police traffic stop dat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1), 1-11.
- Pollock, W., & Menard, S. (2015). Perceptions of unfairness in police questioning and arrest incidents: Race, gender, age, and actual guilt. *Journal of Ethnicity in Criminal Justice*, 13(3), 237-253.
- Quinney, R. (1970). *Social reality of crime*.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 Quinney, R. (1980). *Class, state and crime*. New York: Addison-Wesley Longman.
- Reiman, J., & Leighton, P. (2016).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rison: Ideology, class, and criminal justice*. Routledge.
- Sampson, R. J., & Lauritsen, J. L. (1997).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Crime and justice*, 21, 311-374.
- Sherman, L. W. (1993).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A theory of the criminal sanc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4), 445-473.
- Sunshine, J., & Tyler, T. R. (2003).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 society review*, 37(3), 513-548.
- Taylor, I., Walton, P., & Young, J. (1973). *The new criminology: for a social theory of devia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Thibaut, J.W. and Walker, L. (1975) *Procedural Justice: A Psychological Analysis*. L.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 Tyler, T.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Unnever, J. D., Gabbidon, S. L., & Higgins, G. E. (2011). The election of Barack Obama and perceptions of criminal injustice. *Justice Quarterly*, 28(1), 23-45.
- Walker, S., Spohn, C., & DeLone, M. (2012). The color of justice: Race,

- ethnicity, and crime in America (5th ed.). Belmont, TN: Cengage Learning.
- Weber, Max. (1978). *Economy and Society*, Vol. 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itzer, R. (1996).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indings and problems in the literatur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4(4), 309-322.
- Weitzer, R., & Tuch, S. A. (1999). Race, class, and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by the police. *Crime & delinquency*, 45(4), 494-507.
- Wortley, S., Hagan, J., & Macmillan, R. (1997). Just des (s) erts? The racial polarization of perceptions of criminal injustice. *Law and Society Review*, 637-676.
- Wright, E. O. (1985). *Classes*, London, England: Verso.
- Wu, Y., & Sun, I. Y. (2009). Citizen trust in police: The case of China. *Police quarterly*, 12(2), 170-191.

The Effect of Economic Class on the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Perceived Social Conflict

Cha, Yoojung* · Roh, Sunghoon**

Critical criminology in the Western countries has long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 economic status and his/her percep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issue is based on the conflict perspective toward the creation and enforcement of law. On the contrary, overwhelmed by classical and positivist criminology, our criminology academia lacks critical analyses about the legitimacy of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percep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varies by one's economic status and how the perceived social conflict is associated with the causal process. We used the data drawn from 'Public Opinion Survey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Quality of Life, 2018,' and the sample size was 6,300 in total. We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effect of economic class upon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and the mediating/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as well. The result shows that economic class declines and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increases, the level of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increases. The perceived social conflict has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between the economic class and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strengthen legitimacy and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the level of conflict in our society.

❖ Key words: Perceived criminal injustice, Perceived social conflict, Economic

* The 1st Author, student of Ph.D, Department of Criminology,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class, Conflict theory, legitimacy